

의안번호	2206010
의 퇴 인	장동혁의원
회 답 일	2024. 12.16.
추계번호	24D5458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지정명령을 결정하고 거주지 지정 대상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500만원, 2030년 1억 2,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억 9,500만원(연평균 9,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및 비용부담 (안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23조)	75	88	100	110	122	495	99

-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고위험 성폭력범죄자¹⁾**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및 비용부담(안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23조)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3.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 하도록 하고 거주지 지정 대상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임대 수입 감소를 보전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 소요가 예상됨
 4. 제정안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중 국가가 거주비용을 부담할 대상자 수는 법무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1인당 거주비용은 주거급여(1인 가구 기준)로 가정 하며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적용

1) 안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중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 나.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사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9조제3항(거주지 지정 명령의 결정 등), 안 제10조 제1항(지정거주시설의 지정 등) 및 안 제23조(비용부담)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지정거주시설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1개 이상을 지정거주시설 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함
		거주지정 대상자는 거주지 지정기간 동안 거주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만, 거주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거주지정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2	안 제10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지정거주시설의 지정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주민 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정거주시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거주시설 주변 지역의 치안 강화 및 주민 안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순찰초소의 마련,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함
		국가는 지정거주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3	안 제15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강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정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조제3항(거주지 지정 명령의 결정 등), 안 제10조 제1항(지정거주시설의 지정 등) 및 안 제22조(비용부담)	○	
2	안 제10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지정거주시설의 지정 등)	X	- 지정거주시설 선정위원회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 - 법무부장관 등의 지정거주시설 치안 강화 등과 국가의 비용 지원의 경우, 기존 치안 관련 시설과 장비 현황,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수량,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3	안 제15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강화)	X	거주지정 대상자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은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거나 인력 증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거주지 지정대상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중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거주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예상
-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하고 거주지정 대상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연수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로 해당 시설의 임대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임대 수입 감소를 국가가 보전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 예상

- 제정안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중 국가가 거주비용을 부담할 대상자 수는 법무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1인당 거주비용은 주거급여(1인 가구 기준)와 동일하며 추계기간 동안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²⁾
 - 본 추계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에 임대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취지에서 4개 급지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유사한 사례로 보아 이를 활용하기로 함
 - 한편, 유사사례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주거지원을 살펴보면 최초 2년 지원 후 2년 마다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국가가 계속 거주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³⁾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에서 규정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중 경제력이 없어 국가가 거주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대상자 수를 추정하고 1인당 거주비용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대상자 수)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거주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대상자 수는 2026년 25명, 2030년 37명으로 추정

2) 동일한 소득기준 하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2.0%

-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제정안에 따라 거주지 지정명령 대상이 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수는 325명이고, 출소를 앞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수는 2023년 69명, 2024년 59명, 2025년 59명이며 이후 연도는 2023~2025년 평균인 62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4.4%⁴⁾가 경제력 부족으로 국가가 거주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거급여가 4개의 급지별로 차등적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주민등록인구통계(2023년 말 기준)에 근거한 지역별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표 2] 대상자 수 추정: 2022~2029년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출소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325	-	-	-	-	-	-	-	-
출소 예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	59	59	62	62	62	62	62	62
누적(a)	325	394	453	512	574	636	698	760	822
대상자 수(=a×4.4%)					25	28	31	34	37
1급지(서울)					5	5	6	6	7
2급지(경기·인천)					7	9	10	11	12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5	6	6	7	7
4급지(그 외 지역)					8	8	9	10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인당 거주비용)**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1인당 거주비용(1급지 기준)은 2026년 356,169원/월, 2030년 379,082원/월으로 추정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서울)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216,000원, 4급지(그 외 지역) 201,000원
 - 본 추계에서는 1인당 거주비용이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주거지원, 숙식제공을 받고 있는 출소자는 2022년 기준 1,592명으로 출소자 36,547명 중 4.4%를 차지

[표 3] 1인당 거주비용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월)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급지	355,124	362,227	369,471	376,861	384,398
2급지	279,101	284,683	290,376	296,184	302,107
3급지	224,947	229,446	234,035	238,715	243,490
4급지	185,373	189,080	192,862	196,719	200,6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지정명령을 결정하고 거주지정 대상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 7,500만원, 2030년 1억 2,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억 9,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 수 (a, 명)	1급지	5	5	6	6	7	—
	2급지	7	9	10	11	12	—
	3급지	5	6	6	7	7	—
	4급지	8	8	9	10	11	—
	소계	25	28	31	34	37	—
1인당 거주비용 (b, 원/월)	1급지	355,124	362,227	369,471	376,861	384,398	—
	2급지	279,101	284,683	290,376	296,184	302,107	—
	3급지	224,947	229,446	234,035	238,715	243,490	—
	4급지	185,373	189,080	192,862	196,719	200,653	—
추가재정소요 (=a×b×12개월, 백만원)	1급지	21	22	27	27	32	129
	2급지	23	31	35	39	44	172
	3급지	13	17	17	20	20	87
	4급지	18	18	21	24	26	107
	합계	75	88	100	110	122	495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대상자 수와 1인당 거주비용을 유사사례 등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